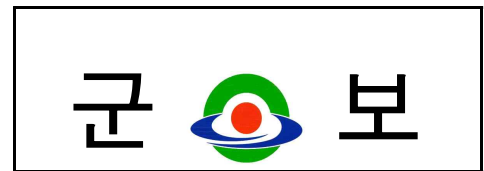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1호 2022. 11. 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51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월 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19호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지방의회의원 행동조례」”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으로,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원”을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각 호”를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예천군”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개인”을 “개인·법인”으로 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의회”를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관”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하여 소속”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소속 지방의회”를 “의회”로,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회”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군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의 제목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금품등의 수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금품 등의”를 “금품등의”로, “금품 등에”를 “금품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품 등 및”을 “금품등 및”으로,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각각 “외부강의등”으로 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호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을 “의원 및 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17조 중 “소속 사무처”를 “의회 소속”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행동조례 위반 시의 조치”를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동조례운영”을 각각 “행동강령운영”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품 등을 제공한”을 “금품등을 제공한”으로, “금품 등을 지체”를 “금품등을 지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품 등”을 각

각 “금품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금품 등이”를 “금품등이”로, “금품 등을”을 “금품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품 등”을 각각 “금품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행동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동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조례로서”를 “위하여”로, “행동조례운영”을 “행동강령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동조례”를 “행동강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를 “학계·법조계·언론계”로, “행동조례”를 “행동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예천군”을 각각 “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예천군”을 “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행동조례의 운영)”을 “(행동강령의 운영)”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와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단,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의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의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회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안·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일시			
위반행위	장소			
내용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의 장

귀하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시행(2022. 5. 19.)됨에 따라 행동강령에서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가공품’ 가액 범위를 반영하여 청렴한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해충돌방지법 유사·중복 조문*의 삭제(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 제10조, 제1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직무 관련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나. 직무권한 행사 부당행위 금지 사항 구체화(안 제10조의3제3호)

다. 외부강사등 사후 신고 규정 반영(안 제13조)

라. 청탁금지법 상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반영(별표 1)